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497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9. 10. 1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인간대상연구"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, 의사소통,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.
- 2. "연구"란 연구개발, 검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 지식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체계적 조사를 말한다.
- 3. "연구대상자"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인체유래물"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(Deoxyribonucleic acid), RNA(Ribonucleic acid), 단백질 등을 말한다.
- 5. "인체유래물연구"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·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.
- 6.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

연구·인체유래물 연구에 관한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4조(총장의 책무) ①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② 총장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(이하 "외부위원"이라 한다)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 또한, 위원회는 하나의 성(性)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1.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사회적 ·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
- 3.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및 연구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
 - 2. 인간대상연구 등의 연구계획서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
 - 가. 연구계획서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
 - 나.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
 - 다.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

- 라.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
- 마. 그 밖에 본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·감독 업무를 수했하다.
- ③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유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했한다.
- 1. 생명유리 및 안전을 위한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
- 2.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
- 3.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마련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했한다.
- ③ 위원장은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연구책임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1. 총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
 - 2.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-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·개발 또는 이용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·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되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.
- 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간사 1인과 행정간사를 1인을 두다.
 - ② 전문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심의면제 확인
 - 2. 신속심의 여부, 심의배정, 자문위원 선정
 - 3. 표준운영지침서 및 가이드라인준비, 검토, 개정
 - 4. 생명연구 관련 최신 쟁점 및 문헌 등에 대한 정보제공
- ③ 행정간사는 관련부서 담당자로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, 심의 안건 준비, 심의 결과 통보, 자료 및 문서 보존 등에 관한 행정적 처리를 담당한다.
- 제10조(자문위원)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위원장이위촉한다.
-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.
- **제11조(심의결과)**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승인: 연구계획서대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
 - 2. 조건부 승인: 지적 사항이 보완된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신속한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.
 - 3. 보완 후 재심의: 지적 사항이 보완된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

받을 수 있다

- 4. 부결: 실시하는데 적절하지 않다. 만약 재심을 받으려면 전부 또는 전면 수정 후 재 접수하여야 한다.
- 5. 승인된 연구 (또는 승인된 사항 등)의 중지 또는 보류
- 제12조(심의면제) 인간대상연구의 경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.
- 제13조(심의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) ① 위원회는 문서로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하며,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.
 - 1. 심의 대상의 명칭
 - 2. 심의 내용
 - 3. 심의 날짜
 - 4. 심의 결과
 - 5. 심의 결과의 사유 또는 의견
 - 6. 연구계획서의 승인인 경우 승인 유효기간
 - 7. 승인 날짜
 - 8. 지속심의 대상인 경우 지속심의 일정
 - 9. 필요 시 이의신청 절차
 - 10. 위원장(또는 그 밖의 인가된 다른 사람)서명 및 서명일
 -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알린 후 심의 신청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14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경비 등)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운영지침)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19.10.1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